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0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3.

임 미 연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임 미 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와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같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유기동물 감소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임미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012
----------	----------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임미연, 서보영, 박종길,
남현주, 정창근, 이진환,
박왕규, 이영빈

1. 제안이유

- 달서구 주민의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및 제4조
-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를 의미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란 반려동물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탁하여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2. 반려동물 돌봄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 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사람

②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 13. (생 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